

● 급여비용의 가산이란?

- 22시 이후 06시 이전, 일요일,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.

<방문요양 및 방문간호>

가산종류	가산비율
22시 이후 06시 이전	급여비용의 30%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일요일	급여비용의 30%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	급여비용의 50%

- ※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- ※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
- ※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% 가산 적용

● 급여제공시간

- 가정방문급여(방문요양(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), 방문목욕, 방문간호)의 급여 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, 간호사, 치위생사, 간호조무사)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한다.
-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및 주·야간 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,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● 비급여대상(전액 본인부담)

- 식사재료비, 이·미용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

- ※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